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 10.] [조례 제5389호, 2023. 11. 10., 일부개정]

전라북도교육청(창의인재교육과), 063-239-34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8. 9, 2009. 8. 11, 2012. 2. 24>

제2조 삭제 <1999.9.1>

제2조의2(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 8. 11, 2012. 2. 24., 2023.11.10.>

1.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2. 2. 24>

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2. 2. 24>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습자가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신설 2012. 2. 24>

제3조 삭제 <2009.8.11>

제3조의2(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9. 8. 11., 2012.2.24.>

1. 강의실이나 열람실(영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열람실·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급수시설

5. 환기시설·채광시설·조명시설·온습도시설·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둘 수 있다.<신설 2009. 8. 11., 2012.2.24.>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의3(단위시설별 시설기준) 법 제8조에 따른 학원의 단위시설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 8. 11, 개정 2012. 2. 24., 2023.11.10.>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기실 : 실험·실습·실기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 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급수시설 :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환기시설·채광시설·조명시설·온습도시설 설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 줄 것.

제3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서 한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8. 11, 개정 2012. 2. 24., 2023.11.10.>

- ② 제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개정 2009. 8. 11, 2012. 2. 24>
- ③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않는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그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개정 2009. 8. 11, 2012. 2. 24>
- ④ 지하실은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3제4호부터 제6호까지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 8. 11, 2012. 2. 24>

제3조의5(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4, 개정 2015. 8. 7.>

제3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은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11. 2>

1. 숙박시설은 학원과 동일건물이거나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1999.9.1>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재학생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재학생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09. 8. 11., 2012. 2. 24., 2012. 11. 2., 2018. 6. 29.>

제5조(학원의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9. 9. 1, 2009. 8. 11, 2012. 2. 24>

제6조(인가 등의 제한) ①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주거용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09. 8. 11>

② 삭제 <1999.9.1>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이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 9. 1, 2003. 1. 11, 2009. 8. 11, 2012. 2. 24>

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이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 9. 1, 2003. 1. 11, 2009. 8. 11, 2012. 2. 24>

제8조 삭제 <2012.2.24>

제9조(권한의 위탁)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은 학원 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 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2019.12.6.>

② 학원 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는 제1항에 따라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 9. 1, 2012. 2. 24., 2019.12.6.>

③ 교육장은 위탁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원 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 연수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2. 2. 24., 2019.12.6.>

④ 위탁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 교육감에게 연수 실시 결과를, 관할 교육장에게 연수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2.24., 2019.12.6.>

제10조(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①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원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지도·자료조사 등 자율관리활동
2. 자율관리활동 중 알게 된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해 감독청에 지도·감독 요청
3. 수강 학생의 성명, 상급 학교 진학정보 등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게시·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자제하는 활동
4. 연수 및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정책 홍보
5. 그 밖에 학원 등의 정책수립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제출

③ 위원회는 연간 활동계획 수립 시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연간계획과 활동 결과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7.]

[중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8.7.>]

제11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소: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3. 개인과외교습자: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교습중지

②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교습정지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하며, 교습중지는 1년으로 한다.
2. 2차위반, 3차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한다.

- ③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4>

[제11조에서 이동 <2015.8.7.>]

부칙 <제5389호,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책임배상보험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하면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99. 9. 1, 2001. 8. 9, 2009. 8. 11, 2012. 2. 24, 2019. 12 .6>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제3조의4제1항 관련)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 의 실 (열람실)	비 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사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종합	90㎡ 이상	
				단과	45㎡ 이상	
				검정고시	45㎡ 이상	
				보습, 논술	45㎡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45㎡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 는 교과로서 유·초· 중·고 학생을 주된 대 상으로 하는 실용외국 어		45㎡ 이상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에 의함
	독서실	독서	유·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 서실		60㎡ 이상	별표 2에 의함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 육활동			별표 2에 의함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활동			별표 2에 의함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45㎡ 이상	단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표 2에 의함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영 제3조의3제1 항관련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계 열		45㎡ 이상	단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 습과정은 별표 2에 의함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 이상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 자연	행정, 경영, 회계, 통계		45㎡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45㎡ 이상	
	기예	기 예				별표 2에 의함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 서실			60㎡ 이상	별표 2에 의함

※ 비고 : 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과 동일할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원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1999. 9. 1., 2001. 8. 9., 2009. 8. 11., 2012. 2. 24., 2016. 8. 12., 2019. 12. 6.>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제3조의4제3항 관련)**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1. 기계 (1-1. 기계정비)	가. 시설 (1) 설계실 60제곱미터 이상 (2) 실습공장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개 이상 (2)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1. 기계 (1-2. 기계제도, 설계)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설계장비(S/W포함) 1인당 1대 이상 (2)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1. 기계 (1-3. 기계용접, 배관, 판금)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용접 (가) 산소, 전기, 특수용접기 각각 2세트 이상 (나) 디스크그라인더 1대 이상 (다) 절단기 1대 이상 (2) 배관 (가) 산소, 전기용접기 각각 2세트 이상 (나) 작업대 2조 이상 (3) 판금과정 (가) 유압 또는 진동절단기 1대 이상 (나) 벤딩 머신 1대 (다) 핸드시어 5개 이상 (라) 산소 또는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2. 자동차 (2-1. 중기운전)	가. 시설 (1) 운전실습장 900제곱미터 이상 (2) 기재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배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2. 자동차 (2-2. 자동 차·중기·농기구 정비)	가. 시설 (1) 정비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2) 기재실 1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3대 이상 (2) 디젤기관 1대 이상 (3) 가솔린기관 3대 이상 (4) 변속기 2대 이상 (5) 차동기 2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8) 휠바란스 1대 (9) 휠얼라이먼트 1대 (10) 배터리테스터기 1대 (11) 배기가스테스터기 1대(CO, HC 겸용) (12)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14) 타이어 탈착기 1대 (15) 에어컨 가스주입기 1대 (16) 중기, 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 농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3. 안전관리(냉 동·열관리,소방 설비,환경관리)	가. 냉동·열관리 (1) 시설 (가)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강의실 30제곱미터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수질, 대기, 폐기물실험장치 1조 이상 (나) 분해조립행 개방행 압축기 1대 이상 (다)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라) 보일러(부속장치포함) 2종 이상 (마) 미싱 2대 이상 (바) 가스분석기 1대 이상 (사) 소방 및 가스설비용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3종 이상 (아)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550m/m, 2인용) 5대 이상 (자)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차)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카) 바이스 3대 이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3. 안전관리(냉동·열관 리, 소방설비, 환경관리)	<p>나. 소방설비</p> <p>(1) 시설</p> <p>(가)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p> <p>(나) 강의실 30제곱미터 이상</p> <p>(2) 설비 및 교구</p> <p>(가)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p> <p>(나) LPG공급설비 모형 1세 트 이상</p> <p>(다) 방호장치 20종 이상</p> <p>(라) 보호구 5종 이상</p> <p>(마) 안전기기 5종 이상</p> <p>(바) 측정공구 5종 이상</p> <p>다. 환경관리</p> <p>(1) 시설</p> <p>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p> <p>(2) 설비 및 교구</p> <p>(가) 대기, 토양, 해양오염 측정기 각 2대 이상</p> <p>(나) 소음진동 측정기 2대 이상</p> <p>(다)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p> <p>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4. 항공	<p>가. 시설</p> <p>(1) 강의실 30제곱미터 이상</p> <p>(2)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항공기 : 고정익 1대, 회전익 1대</p> <p>(2) 왕복기관</p> <p>(가) 수평대향형 : 4기통, 6기통 각 2대 이상</p> <p>(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p> <p>(다) 성형 1대 이상</p> <p>(3) 가스터빈기관</p> <p>(가) Turbo jet 2대 이상</p> <p>(나) Turbo prop 1대</p> <p>(다) Turbo shaft 1대 이상</p> <p>(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5. 금속 (5-1. 귀금속 가공)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보석감정과정 (가) 현미경 2인당 1대 (나) 굴절계 2인당 1대 (다)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라)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 (마) 분광기기(포터블제외) 1대 이상 (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2) 귀금속가공과정 (가) 산소용접기 2대 이상 (나) 마모기 1대 이상 (다) 광택기 1대 이상 (라) 모루 2인당 1대 이상 (마) 압연기(전기롤러) 1대 이상 (바) 실습대(4인용기준)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5. 금속 (5-2. 비파괴검사)	가. 시설 실습실 80제곱미터 이상(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 실습실 33제곱미터 이상 포함. 단, 안전관리상 지하실에 설치 가능)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방사선투과검사용 (가) X-ray 장비 1세트(X-raytube, 제어기, 원격조정기, 충전기, 측정기 등) (나) 동위원소 모형 1세트 이상 (다) 현상 및 판독장비(필림농도계, 필림현상기, 필림 판독기, 필림건조기, 행거 등) 1세트 이상 ※ 단, 과학기술처의 허가과 방사선동위원소 취급(감독·일반)면허자 필요 (2) 초음파탐상검사용 (가) 탐상장비(초음파탐상기, 탐촉자<수직, 사각>등) 1세트 이상 (나) 표준시험편(S.T.B) A1, A2(STB-A, STB-A2, C형, 대비시험편 등) 각 1세트 이상 (3) 자기 및 와전류 탐상검사용 (가) 휴대식(Yoke형) 및 포터블형식 각 1세트 이상 (나) Prod Type : 1세트 이상 (다) 전자유도 탐상장비 1세트 이상 (라) 표준시험편 5세트 이상 (4) 침투 및 누설 탐상검사용 (가) 형광탐사(안막포함) 1세트 이상 (나) 탐상제 5세트 이상 (다) 표준시험편 1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6. 화공 및 세라믹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7. 조선	가. 시설 (1)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2) 설계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공구 2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8. 전기	가. 시설 (1)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2) 전기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직류기, 단상유도, 전동기, 3상 유도전송기 (1/4마 력 이상) 각 5대 이상 (2) 수전·송전배전실 (3) 오실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0대 이상 (4) 실험, 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작업판(900×1800m/m) 10 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9. 전자기기 (라디오·텔레비전·V TR)	가. 시설 (1)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2) 기재실 1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3대 이상 (다) 녹음기 10대 이상 (라) 트랜지스터 수신기 1대 이상 (마)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①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 텔레비전,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③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④ 고전압계 1대 이상 ⑤ T.V 10대 이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9. 전자기기 (라디오·텔레 비전·VTR)	(나) 전자기기과정 ①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 기기과정 ①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 컴퓨터(PC) 기기 5대 이상 ③ 프린터기 2대 이상 ④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라) 비디오 과정 ①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 V.T.R 2대 이상 ③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0. 토목·건축	가. 시설 설계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시설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1. 해양 (11-1. 선원)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공통설비 ① 실습선박(30C/T이상) 1척 이상 ② 환등기 1대 이상 (2) 갑판과 ① 정박계선기구(양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② 로푸 및 와이야루푸 100미터 각 1개 이상 ③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④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⑤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과 ①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②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③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④ 펌프류(원심력, 기어식)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1. 해양 (11-2. 수산)	가. 시설 (1)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2) 실습장 990제곱미터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2. 농림 (12-1. 임업·원예)	가. 시설 (1)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2) 실습지 99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2. 농림 (12-2. 동물)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제곱미터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5점 이상 (나) 박제제작세트 1인당 1세트 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처리장 15제곱미터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 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3. 의복·섬유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섬유과정 (가) 방사 및 방적기계설비 2종 이상 (나)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4) 양재·한복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대 이상 (다) 오버로크재봉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4. 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작업 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5. 국토개발 (도시계획,조 경,지적)	가. 도시계획 (1)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제도용구 10세트 이상 (나) 제도대 10조 이상 (다) 측량도구(편판, 레벨 등) 각1식 이상 나. 조경 (1) 시설 가)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실습지 : 120제곱미터 이상 (2) 설비 및 교구 : 롤러, 소형굴삭기, 잔디깎는기계 각 1대 이상 다. 지적 (1)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평판측기 10조 이상 (나) 트랜짓 5조 이상 (다) 라벨 5조 이상 (라) 테오돌라이트 3조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6. 공예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7. 교통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기록계 2대 이상 (2) 작업대 4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8. 에너지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 원자로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19. 정보통신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1GB 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터미널용 컴퓨터 2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2대 이상 (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2) 정보통신 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0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마) 주파수발진기 1대 이상 (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기반 기술	20. 조경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응용 기술	21. 식음료품 (21-1. 조리)	가. 시설 조리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 L) 1대 이상 (3) 오븐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응용 기술	21. 식음료품 (21-2. 제과·제빵)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빵슬라이서 1대 이상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3)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4) 실습대 8대 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6) 추저울(5kg) 10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 측정기 각 1대 이상 (8) 롤러(DEUGHT SHEETER) 1대 (9) 냉장고(1,000 L) 1대 이상 (10)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응용 기술	21. 식음료품 (21-3. 조주, 와인 소믈리에)	가. 시설 (1) 강의실 30제곱미터 이상 (2)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식음료품 (21-4.커피 바리스타)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세부과정별 교구 (1) 커피머신 1대 이상 (2)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3)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응용 기술	22. 포장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직업 기술	산업 응용 기술	23. 디자인 (23-1. 산업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터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2인당 1대 이상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응용 기술	23. 디자인 (23-2. 패션디자인)	가. 시설 (1)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2) 강의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제도대 2인당 1대 (2) 시청각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로쉬 1세트 이상 (4) 모타미싱 10대 이상 (5)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7)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기술	산업응용기술	24. 피아노 조율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튠링햄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벤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기술	산업응용기술	25. 이·미용 (25-1. 이용)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킹, 면도, 가위 각 10대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 의자수에 상응한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기술	산업응용기술	25. 이·미용 (25-2. 미용)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헤어과정 (가) 건발기 10개 (나) 파마기 10조 (다) 미용의자 미안대 10조 이상 (라) 샴푸대 2대 (마) 세면장 및 급수시설 (2) 피부미용과정 (가) 마사지 침대 3대 (나) 웨곤 3조 (다) 얼굴모형 2대 (라) 운장고 1대 (마)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기술	산업응용기술	25. 이·미용 (25-3. 분장)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분장세트 30조 (2) 가발 3종 40개 (3) 마네킹 30개 (4) 수염재료 일체 (5) 상투류 50개 (6) 시청각기구 1조 (7) 특수분장제조기 1조 (8) 조명시설 2조 (9) 분장실습대 및 의자 15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응용 기술	26. 사진	가. 시설 (1)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2) 암실 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응용 기술	27. 인쇄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기타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서비스	28. 속기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 상(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서비스	29. 전산회계	가. 시설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 주변기기 (3) 관련소프트웨어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서비스	30. 전자상거래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 주변기기 (3) 관련 소프트웨어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서비스	31.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 담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산업 서비스	32. 텔레마케팅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화부스 1인당 1개 이상 (2) 전화기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 카지노딜러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4. 도배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5. 미장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6. 세탁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드라이클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아이롱 1대 이상 다.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일반 서비스	37. 애견 미용·훈련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샤워 시설 포함) 3개 이상 (다) 동물 전용 드라이기 10개 이상 (2) 애견 훈련 (가) 교습과정 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일반 서비스	38. 강의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대(4인용) 5대 이상 (2) 인체모형, 수의, 관 5개 이상 (3) 화장도구 5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일반 서비스	39. 호스피스, 병 원코디네이터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일반 서비스	40. 항공승무원	가. 시설 (1) 강의실 : 30제곱미터 이상 (2)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3) 어학실습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제곱미터 이상 설치 (2) LAB 20조 이상 (3)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4)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마루판 등) 설치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일반 서비스	41. 청소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컴퓨터	42. 소프트 웨 어·멀티미디 어·인터넷·컴 퓨터·게임·로 봇·정보처리· 통신기기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 <삭 제>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문화 관광	43. 출판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 편집프로그램 2종 이상 (3) 프린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문화 관광	44. 영상, 음반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이프 등 5종 이상 (6) T.V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대 이상 (8) 간이 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세트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문화 관광	45. 영화	가. 시설 (1)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2) 현상실 10제곱미터 이상 (3) 녹음실 15제곱미터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문화 관광	46. 방송	가. 공통시설 강의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기본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②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③ 동기신호발생기(SYNGENERATOR) 1대 ④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⑤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⑥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⑦ 고화질녹화기(S. VHS) 1대 이상 ⑧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⑨ 편집기(EDITOR) 1대 1 또는 2대 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배타캠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 이상 ②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③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문화 관광	46. 방송	<p>(3) 방송실습 제작실</p> <p>(가) S. VHS 편집실</p> <p>① 기재실 30제곱미터 이상</p> <p>② 설비 및 교구</p> <p>㉠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p> <p>㉡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p> <p>㉢ 방송용 녹화기(S. VHS) 1 : 1, 2대 이상</p> <p>㉣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p> <p>㉤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p> <p>㉥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p> <p>(나) 베타캠 편집실</p> <p>① 기재실 30제곱미터 이상</p> <p>② 설비 및 교구</p> <p>㉠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p> <p>㉡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p> <p>㉢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p> <p>㉣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p> <p>㉤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p> <p>㉥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p> <p>※ (가) S. VHS 편집실과 (나) 베타캠 편집실 중 선택</p> <p>(다) 녹음실</p> <p>① 기재실</p> <p>㉠ 녹음조정실 30제곱미터 이상</p> <p>㉡ 녹음 스튜디오 30제곱미터 이상</p> <p>② 설비 및 교구</p> <p>㉠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p> <p>㉡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p> <p>㉢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p> <p>㉣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p> <p>㉤ 방송용 음향증폭기(P. A. AMP) 1대 이상</p> <p>㉥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p> <p>㉦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p> <p>㉧ 영상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p> <p>㉨ MULTI TRACK RECORDER 1대</p> <p>㉩ CASSETTE DECK 1대</p> <p>㉪ COMPACT DISK 1대</p> <p>㉫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p> <p>(라) 야외녹화장비</p> <p>①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p> <p>②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p> <p>③ 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p>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문화 관광	46. 방송	<p>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p>(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2) 방송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방송기술 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4) 아나운서·리포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문화 관광	46. 방송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① '가'목의 공통시설 ② 기재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②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③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④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⑤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⑥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⑦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⑧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⑨ 레벨미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⑩ 채널혼합기 1대 ⑪ 채널변화기(8CH이상) 1대 ⑫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⑬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⑭ 영상위상 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문화 관광	47. 캐릭터	가.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 주변기기 및 디자인프로그램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문화 관광	48. 관광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반당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직업 기술	간호 보조 기술	49. 간호조무사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패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대 이상 (11) 주사 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세트 (13) 기관절개관(CUNNULA KIT))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기예	50. 모델, 연기(연극, 뮤지컬,오페라)	가. 시설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기예	51.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 비 (1) 카드 5종 이상 (2) 동전 5종 이상 (3) 마이크로 5종 이상 (4) 파이어 5종 이상 (5) 악세사리 5종 이상 (6) 멀티미디어 5종 이상 (7) 스테이지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기예	52. 화술, 응용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녹음기 2대 이상 (2) 강연대 2개 이상 (3) 원고철판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기예	53. 바둑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2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2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기예	54. 공예(꽃기예, 꽃꽂이, 종이접기 등), 도예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패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기예	55. 서예	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틀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기예	56. 만화(만화영화)	가. 시설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 라이트 박스 1인당 1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기예	57. 무용(전통무용·현대무용)	가. 시설 (1) 무용실 45제곱미터 이상 (2) 탈의실 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기예	58. 국악·실용음악·성악	가. 시설 음악실 45제곱미터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이상) 이상 (2) 과정별기준 (가) 악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나) 성악과정 ① '나'목(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③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 미술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소묘, 수채화(서양화), 한국화(동양화) 등 교습과정 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 댄스	가. 시설 1) 실습실 45㎡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1. 음악(피아노)	<p>가. 시설 음악실 45제곱미터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 감상용 오디오 1대 이상 (2) 과정별기준 (가) 악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나) 성악과정 ① '나'목(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③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2. 미술	<p>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2) 서양화 과정 :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3) 동양화 과정 : 벼루, 모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3. 무용	<p>가. 시설 1) 무용실 45제곱미터 이상 2) 탈의실 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4. 독서실	<p>가. 시설 열람실 60제곱미터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 1인당 1대(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8센치미터 이상, 세로 58센치미터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5. 특수 교육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 등)	<p>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문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치료교육 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별첨처	정보	66. 정보교과	<p>가. 시설 실습실 45제곱미터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별표 3] <개정 2019. 12. 6.>

실습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제5조)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일시수용능력인원	비 고
직업 기술	산업	1. 기계 (1-1. 기계정비)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기반	1. 기계 (1-2. 기계제도, 설계)	2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기술	1. 기계 (1-3. 기계용접, 배관, 판금)	20
	2. 자동차 (2-1. 중기운전)		30	운전실습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수용능력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2. 자동차 (2-2. 자동차중가농기구정비)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3. 안전관리(냉동·열관리·소방설비·환경관리)		4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4. 항공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5. 금속 (5-1. 귀금속가공)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5. 금속 (5-2. 비파괴검사)		40	실습실 80제곱미터 기준
	6. 화공 및 세라믹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7. 조선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8. 전기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9. 전자기기 (라디오·텔레비전·VIR)	4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10. 토목·건축	2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11. 해양 (11-1. 선원)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11. 해양 (11-2. 수산)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12. 농림	12-1. 임업·원예)	4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실습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수용능력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12-2. 동물)	2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사육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수용능력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13. 의복·섬유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일시수 능력인 원	비 고
	산업 기반 기술	14. 광업자원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15. 국토개발(도시계획, 조경, 지적)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16. 공예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17. 교통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18. 에너지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19. 정보통신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20. 조경	2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산업 응용 기술	21. 식음료품 (21-1. 조리)	40	조리실 60제곱미터 기준
		21. 식음료품 (21-2. 제과·제빵)	3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21. 식음료품 (21-3. 조주, 와인 소믈리에)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1. 식음료품 (21-4. 커피 바리스타)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22. 포장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23. 디자인 (23-1. 산업디자인)	3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23. 디자인 (23-2. 패션디자인)	4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24. 피아노 조율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25. 이·미용 (25-1. 이용)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25. 이·미용 (25-2. 미용)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25. 이·미용 (25-3. 분장)	2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26. 사진	4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27. 인쇄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산 업 서비스	28. 속기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29. 전산회계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30. 전자상거래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31.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32. 텔레마케팅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일시수 용능력인 원	비 고	
		33. *****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34. 도배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35. 미장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36. 세탁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일 반 서비스	37. 애견 미용·훈련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38. 장의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40. 항공승무원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41. 청소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컴퓨터	42.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문화 관광	43. 출판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44. 영상, 음반	3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45. 영화	3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문화 관광	46. 방송	2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47. 캐릭터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48. 관광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간호보 조기술	49. 간호조무사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기 예	기 예	50. 모델·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3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51. 마술(매직)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52. 화술, 웅변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53. 바둑	2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54. 공예(꽃기예·꽃꽂이, 종이접기등), 도예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55. 서예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56. 만화(만화영화)			40	실습실 60제곱미터 기준	
57. 무용(전통무용·현대무용 등)			20	무용실 45제곱미터 기준 (실습실 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수용능력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58. 국악·실용음악·성악			2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일시수용능력인원	비 고
		59. 미술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60. 댄스	2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예능	예능	61. 음악(피아노)	20 (15)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62. 미술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63. 무용	2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정보	정보	64. 정보교과	30	실습실 45제곱미터 기준

비고 : 상기 열거되지 아니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별표 4】 <신설 2009. 8. 11>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의 3 제4호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 할 것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 5】 <신설 2009. 8. 1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설비기준(제3조의 3 제5호 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인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명(인공조명)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별표 6】 <개정 2012. 11.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강의실 등	가. 강의실 : 135㎡이상 나. 보건실 : 33㎡이상 다. 휴게실 : 66㎡이상(남, 여 별로 구분 가능) 라.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 100㎡이상(단, 외부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기숙사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수용인원×4㎡ 이상 [단, 개별숙소에 세면장 및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개별숙소에 세면장 및 샤워실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수용인원×0.4㎡ 이상(남, 여 구분) 3) 세탁실 1실(남·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 (수용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3) 급수시설(수용예정 인원을 고려한 수량)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급식시설	가. 조리실 1) 면적	
	급식학생수	면적
	50인 이하	14㎡
	51인~100인	14㎡+0.14㎡×(급식학생수-50)
101인~150인	21㎡+0.14㎡×(급식학생수-100)	
151인~200인	28㎡+0.14㎡×(급식학생수-150)	
201인~250인	35㎡+0.14㎡×(급식학생수-200)	
251인~300인	42㎡+0.14㎡×(급식학생수-250)	
301인~600인	49㎡+0.05㎡×(급식학생수-300)	
601인~900인	64㎡+0.04㎡×(급식학생수-600)	
901인~1,200인	76㎡+0.04㎡×(급식학생수-900)	
1,201인~1,500인	88㎡+0.04㎡×(급식학생수-1,200)	
1,501인이상	100㎡+0.02㎡×(급식학생수-1,500)	
2) 시설·설비 기준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수에 적합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저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도는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방충·방서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 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급식시	3) 기구기준	

설	품목	비고
	1. 개수대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
	2. 조리작업대	높이 80cm 내지 90cm로서 급식학
	3. 냉장고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4. 식기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5. 조리용구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6. 제반기 또는 밥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7. 국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8. 조리용구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
	9. 저울	100kg·10kg 및 1kg용 각 1대를 갖
	10. 계량컵	1개이상을 갖춘다.
	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온도계 및 온·습 도계	각 1개씩을 갖춘다.
	12. 조리종사자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	조리종사자별로 각 한벌씩 갖춘다.
	13. 식품절단기	권장사항
	14. 식품박피기	권장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권장사항
	16. 자동세척기	권장사항
	17. 식품운반용 수레	권장사항
	18. 세미기	권장사항
	19. 식기소독기	권장사항
	20. 배식대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
	21. 식판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
	22.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
나. 식품보관실		
1) 시설·설비 기준		
	품목	비고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2. 환기설비	환풍기등을 설치한다
	3. 방습시설	
	4. 방충·방서설비	
	5. 배수설비	
	6. 조명설비	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
	7. 온·습도계	
	8. 기타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기기	
다. 식당		
1) 면적 : (수용예정 인원 × 1/2 × 1㎡) 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이상		
2) 식탁 및 의자 : 수요예정 인원 1/2이 일시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